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4 · 16세 월호참사 피해구제 및
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황종우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“4·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”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가 부재하여, 임기 규정 신설을 통한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

3. 주요내용

가. “4·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” 위촉직 위원의 임기조항
신설(안 제3조의2)

1)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, 한차례 연임 가능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
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)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위촉된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위원의 임기는 최초 위촉된 날부터 2년

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)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	
연 락 처	(051) 773 - 6281